www.scourt.go.kr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1051 이사회결의무효

원 고 이문원

소송대리인 경북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권헌서, 이동규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피 고 학교법인 경안학원

안동시 금곡동 124

대표자 이사장 김태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수

변 론 종 결 2013. 11. 22.

판 결 선 고 2013.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www.scourt.go.kr

청 구 취 지

피고가, ① 2010. 7. 13. 이사회에서 최경용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② 2010. 8. 3. 이사회에서 한양섭, 정준현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③ 2011. 1. 12. 이사회에서 김정희, 김현진을 개방이사로, 배병환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④ 2011. 7. 19. 이사회에서 김옥희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⑤ 2011. 9. 23. 이사회에서 김현진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⑥ 2012. 1. 19. 이사회에서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⑦ 2012. 4. 18. 이사회에서 김옥희,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⑧ 2012. 10. 19. 이사회에서 김종민을 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한 결의, ⑨ 2013. 4. 4. 이사회에서 변봉갑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이하 위 ① 내지 ⑨항 각 결의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분쟁발생

1) 피고 학교법인 경안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이하 '경안노회'라 한다)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산하 노회로서 안동, 의성, 영양, 청송 지역에 있는 소속 교회 사이에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담당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며, 원고는 2010. 7. 1.에 취임하였다가 2013. 6. 18. 임기만료로 퇴임한 피고 학원의 이사이다.

2) 경안노회는 피고 학원의 신임 이사나 감사를 인준하는 등으로 피고 학원의 운

영에 관여하여 왔는데, 2009년경부터 위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하여 경안노회와 피고 학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장로면직 및 출교재판

1) 배병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로서 2007. 7. 25.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경안노회 재판국은 2010. 3. 23. 배병환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경안노회 재판국 제166-2호), 배병환이 위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6. 14. 배병환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0호).

2) 김종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로서 2009. 5. 20.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였으나, 경안노회 재판국은 2010. 5. 24. 김종민에 대하여 장로면직 및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경안노회 재판국 제166-3, 5호), 김종민이 위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총회 재판국은 2010. 9. 1. 김종민의 상고를 기각하였다(예총 재판국 사건 제94-13호, 이하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위 경안노회 재판국의 각 판결, 예총 재판국의 각 판결을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 학원 정관의 규정

1) 2012. 10. 19. 개정 전의 피고 학원의 정관은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이사 : 12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3명으로 하며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항존직분자이어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012. 10. 19. 개정된 피고 학원의 정관은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8인(이사장 1인 및 1/4의 개방이사를 포함한다)

2. 감사 :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8조의2(개방이사의 정수 및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임원정수의 1/4명으로 하되 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돈독한 신앙인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라. 피고 학원의 이사회 결의

1) 당시 개방이사였던 배병환을 비롯한 변봉갑, 김종민, 양용철, 박원택, 김태진 및 원고는 2010. 7. 13. 피고 학원의 30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최경용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2) 배병환과 최경용을 비롯한 변봉갑, 김종민, 이교섭, 김태진 및 원고는 2010. 8. 3. 피고 학원의 310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한양섭, 정준현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3) 개방이사인 김종민과 최경용, 정준현을 비롯한 변봉갑, 이교섭, 김태진 및 원고는 2011. 1. 12. 피고 학원의 315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정희, 김현진을 개방이사로, 배병환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4) 김종민, 한양섭, 정준현, 김현진, 김정희를 비롯한 변봉갑, 김태진 및 원고는 2011. 7. 19. 피고 학원의 318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옥희를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5) 김종민, 최경용, 정준현, 김현진, 김옥희를 비롯한 변봉갑, 이교섭, 김태진 및 원고는 2011. 9. 23. 피고 학원의 319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현진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6) 김종민, 최경용, 정준현, 한양섭, 김정희, 김현진, 김옥희를 비롯한 김태진, 변봉갑 및 원고는 2012. 1. 19. 피고 학원의 320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7) 김종민, 한양섭, 김정희, 김옥희, 김정길을 비롯한 김태진, 변봉갑 및 원고는 2012. 4. 18. 피고 학원의 321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옥희, 김정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www.scourt.go.kr

8) 김종민, 김옥희, 김정희, 김현진, 한양섭, 최경용, 김정길과, 정준현으로부터 위임받은 김태진을 비롯한 변봉갑, 김태진 및 원고는 2012. 10. 19. 피고 학원의 324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김종민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9) 김종민, 김옥희, 김정길, 한양섭, 김현진, 김정희를 비롯한 김태진, 변봉갑 및 원고는 2013. 4. 4. 피고 학원의 327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변봉갑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 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학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3. 6. 18. 피고 학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피고 학원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그 퇴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퇴임이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51352 판결,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학원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

www.scourt.go.kr

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 10,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원의 이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변봉갑, 김종민, 김태진, 한양섭, 김정희, 김현진, 김옥희, 김정길 8인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라면 현재 이사 중 김태진만이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 원고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김태진만으로는 피고 학원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학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학원의 정관 제18조의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이하 '총회헌법'이라 한다) 제2편 제4장 제22조에 의하면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로 선임되고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장로, 집사 또는 권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항존직분자여야 하는데, 배병환, 김종민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로에서 면직되고 출교조치를 받은 자로서 더 이상 항존직분자라고 볼 수 없어 피고 학원의 정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를 때 피고 학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배병환은 예총재판국에서 2010. 6. 14. 면직 및 출교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열린 제1의 라. 1), 2)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최경용, 한양섭, 정준현을 이사로 선

www.scourt.go.kr

임하는 결의에 관여하였으므로, 위 각 결의는 개방이사 자격 없는 자가 참석한 결의이고, 이사 자격이 없는 배병환을 제외하면 개회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그 이후 개최된 제1의 라. 3) 내지 9)의 각 이사회결의도 2010. 9. 1. 면직 및 출교판결이 확정된 김종민과 제1의 라. 1), 2)의 각 이사회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등이 참석한 결의로서 자격 없는 이사 또는 개방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개회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은 3심제로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하는 것임에도 경안노회 재판국에서 1심 판결을 담당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판결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징계한 판결로 모두 무효이다.

다) 위 예총재판국 판결 당시 배병환은 감리회 소속 지구촌비전교회 협동장로였고 2010. 12. 16.부터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경안비전교회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었고, 김종민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채순복음샘솟는 교회의 협동장로였고 2010. 12. 16.부터는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경안비전교회 시무장로로 입직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항존직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결의에 적극 참여하여 찬성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마) 피고 학원의 2012. 10. 19. 개정 전의 정관상 개방이사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1조 규정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배병환, 김종민이 장로직을 면직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학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

www.scourt.go.kr

아야 한다.

바) 피고 학원의 2012. 10. 19. 개정 정관상 개방이사 자격으로 항존직분자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였던 배병환은 2010. 7. 13. 피고 학원의 이사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0. 6. 14. 예총 재판국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장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였던 김종민은 2011. 1. 12. 피고 학원의 이사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10. 9. 1. 예총 재판국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장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③ 2012. 10. 19. 개정 전 피고 학원의 정관에는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 자격을 '항존직분자'로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총회헌법 제2편 제4장 제22조에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병환, 김종민은 이 사건 각 판결을 받아 장로직에서 면직됨으로써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는 자격 없는 개방이사 또는 무효인 선행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개방이사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을 제외하면 개회정족수에 미달하여 개최되었으므로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판결이 모두 무효인지 여부

가) 교회의 권징재판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

www.scourt.go.kr

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의 징계결의의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판결로 인하여 배병환, 김종민의 피고 학원 이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이 무효이므로 배병환, 김종민의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 학원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각 판결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판결의 배경 및 내용

갑 제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판결의 배경

www.scourt.go.kr

최근 경안노회는 피고 학원에서 선임한 이사들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고 이에 피고 학원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고, 2009년경부터 피고 학원의 직원 채용, 이사 파송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전직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009. 10. 8., 같은 달 9. 개최된 경안노회 제166회 총회에서 "피고 학원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되 전권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하다. 임원(이사, 감사) 인준 건은 전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한다."라는 결의를 하고, 별지 경안노회규칙 중 산하기관 관련 부분 기재와 같이 경안노회규칙 제24조 내지 제24조의4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2) 배병환에 대한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 내용

① 배병환은 2008. 4. 10., 같은 해 4. 11. 경안노회의 제163회 정기노회 당시 경안노회의 회원이었다. 위 정기노회에서 "본 노회 산하 각 기관에 이사(개방이사 포함) 및 감사(개방감사 포함) 중 경안노회 규칙 제26조 위반자는 즉시 한 곳을 사임하도록 한다"라고 결의하였고, 그 당시 경안노회규칙 제26조 제1항은 "본 노회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는 산하 다른 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배병환은 당시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 학교법인 경안신학원 감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위 제163회 정기노회 후 피고 학원의 이사 또는 학교법인 경안신학원 감사 중 하나는 즉시 사임하였어야 함에도 사임하지 않고 피고 학원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 피고 학원의 이사와 학교법인 경안신학원 감사직을 모두 유지하였는바, 이는 경안노회규칙 제26조 제1항과 제163회 정기노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항[1]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에 정해져

1) 제37조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1.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

www.scourt.go.kr

있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경안노회는 피고 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경안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규칙을 신설하였는데, 배병환은 경안노회의 위 개정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태진의 경안노회에 대한 이 법원 2009카합149호 개정규칙등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배병환은 경안노회 회원으로서 마땅히 산하기관인 피고 학원에 대한 경안노회의 결의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경안노회의 권위와 위 전권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위 개정규칙의 효력을 부인했다. 이는 위 개정규칙 및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개정규칙 제23조 제1항, 총회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2] 위반이고, 또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2조 제1 내지 제4항[3]도 부정한 것이다.

(3) 배병환에 대한 예총 재판국 판결 내용

배병환이 경안노회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과 제163회 정기노회 결의를 위반하였고, 경안노회의 결의에 승복하지 않고 노회 규칙과 총회헌법을 어기면서 이사회의 분쟁을 국가 법정으로 가져가서 위 국가 법정에서의 다툼 당시 피고

명을 받는 기관이다.

2) 제75조 [행정소송의 대상범위]

3.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본 교단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재판국 또는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최종 확정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학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3)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92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부정하였는바, 이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에 정해진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4) 김종민에 대한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 내용

① 경안노회는 제166회 정기노회에서 피고 학원의 임원 인준을 피고 학원 전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전권위원회는 2009. 10. 22. 피고 학원의 이교섭의 이사 인준 청원을 불허하였음에도 피고 학원의 이사인 김종민은 이교섭을 교체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개정규칙 중 하나인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김종민은 피고 학원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2009. 10. 24. 양용칠을, 같은 해 11. 21. 배병환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안노회로부터 이사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인준받지 않고 이사취임승인신청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개정규칙 중 하나인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③ 김종민은 2009. 12. 3. 피고 학원 제307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박원택, 원고를 각 이사로 선임하였는데, 개정규칙 중 하나인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안노회로부터 이사인준을 받아야 함에도 인준받지 않고 이사취임승인신청서를 경상북도교육청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2 제2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이는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④ 경안노회는 제166회 임시노회에서 피고 학원 이사회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후임이사 선임권은 전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전권위원회는 2010. 1.

www.scourt.go.kr

4. 피고 학원에게 배병환 개방이사 후임으로 장점술 장로와 김정수 장로를 복수 추천하니 경상북도교육청에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김종민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2010. 1. 15. 제308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권위원회에서 선임통보도 하지 아니한 김태진 장로와 이순창 목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전권위원회에서 개방이사로 추천한 장점술, 김정수 장로는 개방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전권위원회에서 추천하지도 않은 배병환을 개방이사로 재선임한바, 이는 개정규칙 중 하나인 경안노회규칙 제24조의3 제3항에 정해진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2항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한다.

(5) 김종민에 대한 예총 재판국 판결 내용

피고 학원은 경안노회로부터 설립허락을 받고 설립되었고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한 정관 변경 전의 구 정관에는 경안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피고 학원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었으며, 현재 정관에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 학원의 임원으로 취임할 때에는 관행적으로 60여 년 동안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아왔으므로, 김종민이 경안노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않고 이사를 선임하거나 경안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권위원회에서 선임을 통보한 장로들을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 위 행위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다)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인지 여부

(1) 배병환, 김종민에 대한 이 사건 각 판결의 정계사유는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장로회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7조 제1항은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조 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

www.scourt.go.kr

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제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안노회는 1953. 11. 24. 제54회 총회를 열어 안동에 기독교 고등학교 설립청원을 허락하기로 가결하였고, 피고 학원은 1954. 2. 20. 설립되었는데, 피고 학원 설립 무렵 이사장 반피득을 비롯한 미국인 3명과 한국인 이사 3명, 감사 2명이 작성한 "재단법인 경안고등학원기부행위" 문서에는 피고 학원의 명칭이 경안노회교육재단이 아닌 "재단법인 경안고등학원"(제3조)으로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經)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수(受)하지 아니하면 매매, 기부, 양여 또는 담보 등을 할 수 없음"(제6조),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제12조), "이사호선으로 이사장 1인을 선정하여 문교부 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제13조), "본 기부행위는 이사 정원 3분의 2 이상 동일(同一)로서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수(受)치 않으면 변경할 수 없음"(부칙 제25조)이라고 되어 있었고, 달리 경안노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나) 1966년 피고 학원의 정관에는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경안노회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이사와 감사는 경안노회의 승인을 얻은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14조), "이 정

관은 경안노회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문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제28조)라는 규정이 있었다.

(다) 1963. 6. 26. 사립학교법 제정 이후 정부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피고 학원은 임원 선임방법을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 당시 정관에는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5조),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1항),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제7조 제2항),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20조 제1항)라고 되어 있고 경안노회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 학원은 경안노회 승인 없이 이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한 후에도 관례적으로 신임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안노회에 이사·감사 인준 요청서를 제출하여 경안노회로부터 인준을 받았고 경안노회가 반려한 경우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 다시 인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경안노회로부터 학원 보조금 등으로 2005년 1,760만원, 2006년 3,080만원, 2007년 1,900만원, 2008년 2,470만원, 2009년 2,77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나, 경안노회가 직접 피고 학원을 상대로 재정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반피득 선교사가 경안노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각 판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고 학원의 정관에 의할 때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로부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 등에 관하여 어떠한 관리나 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학원 정관의 변경을 연혁적으로 살펴 볼 때 경안노회로부터 임원 선임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기타 재산관리, 정관변경, 해산 등에 있어서 경안노회의 찬성 또는 승인을 요하는 규정도 삭제된바, 그렇다면 경안노회 규칙에서 피고 학원을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으로 하고, 피고 학원의 임원은 경안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 학원이 자체적으로 경안노회의 위와 같은 규칙이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이상 피고 학원으로 하여금 위 규칙에 따르도록 강제할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로부터 학원보조금을 지급받고 관례적으로 이사 선출에 관하여 경안노회의 인준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학원이 자체적으로 경안노회의 의견을 듣고 행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두고 피고 학원과 경안노회의 관계가 산하기관과 감독기관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각 판결의 유효성

이 사건 각 판결은 배병환, 김종민이 경안노회규칙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및 개정규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총회헌법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였음을 그 이유로 하고 있는데, 위반이 문제된 경안노회규칙과 개정규칙은 모두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임을 전제로 하는 규칙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 학원이 경안노회의 산하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배병환, 김종민의 행위가 개정규칙, 경안노회규칙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1항 또는 총회헌법 제92조 제1 내지 제4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각 판결이 경안노회와 피고 학원의 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상태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안노회 재판국에서 배병환, 김종민에 대하여 장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이 이루어진 점,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안노회의 장로이면서 피고 학원의 이사이기도 한 배병환, 김종민은 피고 학원의 이사로서의 지위에서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피고 학원의 업무를 처리하면 될 뿐 피고 학원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안노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경안노회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판결을 따르는 경우 경안노회가 자신의 뜻에 배치되는 피고 학원의 임원에 대하여 모두 장로직에서 면직 또는 출교판결을 하는 방식으로 피고 학원의 임원 지위를 박탈시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바, 이는 현저히 부당하고 위에서 본 사립학교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배병환이 이 법원 2009카합149호 가처분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행위가 총회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3항의 문언에는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교회와의 의견 차이로 소송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병환을 장로직에서 면직하고 출교처분을 한 위 판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판결이 그 사유로 들고 있는 배병환, 김종민의 위 행위가 경안노회 규칙 또는 개정규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병환, 김종민의 위 행위를 두고 총회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

www.scourt.go.kr

건 각 판결은 배병환, 김종민에게 장로직을 면직하거나 출교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경안노회의 뜻에 따르지 않는 배병환, 김종민을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 지위에서 배제시키기 위하여 한 판결로서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은 무효라 할 것이다.

3) 소결

이 사건 각 판결이 무효인 이상 배병환, 김종민은 이 사건 각 판결에 따라 장로로서의 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병환은 제1의 라. 1), 2)의 각 이사회 결의 당시, 김종민은 제1의 라. 3) 내지 9)의 각 이사회 결의 당시 각 피고 학원의 개방이사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방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배병환이 참석한 2010. 7. 13.자, 2010. 8. 3.자 각 이사회결의는 개회·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무효의 결의이고 그에 터잡은 나머지 각 이사회결의도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균 이 상 균

판사 정은영 정은영

판사 정덕기 정덕기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별지 : 경안노회규칙 중 산하기관 관련 부분>

제7장 이사 감사 및 총회 총대

제23조(이사 및 감사) 본회는 본회 유지재단 및 각 기관에 이사, 감사를 파송한다.

1) 본회의 산하기관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경안학원, 학교법인 경안신학원, 사회복지법인 경안신육원, 경안성로원

제24조(이사 및 감사의 선정) 본회가 설립한 산하기관(본회 유지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이사(개방이사 포함, 이하 같음) 및 감사(개방감사 포함, 이하 같음)의 선정은 그 기관의 정관에 따르되, 그 기관의 정관이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그 기관은 그 정관의 규정을 이유로 본 규칙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단, 연임은 1회에 한한다.(2009. 10. 9. 개정)

제24조의 2(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한 인준 등)

1)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는 통합측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의 이사 정수의 과반수는 본회 소속 목사 및 장로이어야 한다.(2009. 10. 9. 신설)
2) 산하기관이 본회 회원과 본회 소속 교회의 항존직을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승인(또는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소속 교회의 당회와 본회로부터 각각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방감사의 정수가 1인인 경우에는 그 개방감사 선임 결과를 당회와 본회에 보고한 때에 곧 인준을 받은 것으로 본다.(2009. 10. 9. 신설)
3) 산하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를 즉시 교체 선임하여야 한다.(2009. 10. 9. 신설)
4) 산하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사임이나 사망, 해임 등의 사유로 유고가 발생하여 후임 이사 및 감사를 시급히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회 임원회 및 공천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임 후 본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그 이사 및 감사를 즉시 해임하고 교체 선임하여야 한다.(2009. 10. 9. 신설)

제24조의 3(이사회에 대한 불신임 결의)

1) 본회는 산하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대하여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2009. 10. 9. 신설)
2) 본회가 전항의 불신임 결의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이사 및 감사 전원은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2009. 10. 9. 신설)
3) 본회가 불신임 결의 후 후임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그 기관에 선임 결과를 통보한 경우 그 기관의 이사회는 본회가 선정한 이사 및 감사 전원에 대하여 즉시 주무관청에 승인(또는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9. 10. 9. 신설)

제24조의 4(정관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산하기관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009. 10. 9. 신설)

제26조(이사 및 감사의 겸임 제한) 본회는 여러 회원이 노회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겸임을 제한한다.

1) 본노회 각 기관의 이사 및 감사는 산하 다른 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2) 본노회 산하 각 기관의 직원은 다른 기관의 이사 및 감사가 될 수 없다.

www.scourt.go.kr

정본입니다.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손현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